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보일러의 연료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화공약품(활성탄)을 주식회사 석문에너지(이하“석문에너지” 및 계약자라 한다)에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자가 알아야 할 구매조건과 공급자의 자격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제2조 계약수량 및 발주

가. 계약수량

연간 단가계약 추정물량을 계약수량으로 하며 발전소 운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추정 계약물량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공급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발주

발주는 인도지시서(납품지시서)로 팩스, 이메일 또는 유선상으로 수시 발주한다.

다. 인도(납품)지시

인도지시는 납품 요청일로부터 2일 이전에 발주하고, 납품량 수급 변동으로 납품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 1일 전에 통보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까지 차기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공급한 물량의 단가는 기존 단가를 적용한다.

제4조 납품 및 납기

가. 납품

- ① 공급자는 모든 구매약품에 대해 정상적인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사용량 및 입고관리를 해야 하며, 필요량에 대해 각 납품 요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계약자가 유선상으로 우선 통보하였을 때, 최대한 신속히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석문에너지 내 약품저장탱크에 각 약품을 충전 시 주변에 오염이 발생되지 않

아야 한다. 만약 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자 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③ silo에 하역하는 활성탄은 이물질을 완전 제거한 후 밀폐차량(전용차량, BCT)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기준납기 : 납기는 인도지시서상의 지정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장소

계약자가 지정한 silo에 하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라. 납품수량

- ① 납품 시 수량 및 포장 단위별로 확인하여 품질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계량은 석문에너지 내 계근대의 실계근량으로 한다.
- ② 화공약품 계량 및 대금 요청 시 적용단위는 kg으로 한다.

제5조 품질의 보증 및 관리

- 가. 공급자는 공급하는 화공약품의 품질수준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품질활동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제시된 품질규격을 보증하여야 한다.
- 나. 활성탄은 재생탄 및 혼합제품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한다.
- 다. 공급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화공약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정시 계약자에게 즉시 알리고 개정자료를 전달한다.
- 라. 공급자는 화공약품 최초 공급 시 그리고 연 1회 이상 계약자 입회하에 채취한 시료를 공인기관에 시험의뢰(공급규격에 명시한 항목),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납품 시 및 요청시마다 공급자측 자체분석 시험성적서(제조사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마. 공인기관 시험분석에 필요한 일체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시험검사결과는 나오는 즉시 공급자 경유 없이 계약자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바. 계약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공급자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을 감독할 수 있고, 공급자는 계약자의 품질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사. 약품 투입 전·후 화학적 반응이 없어야 하며, 고형물 발생 등 물리적 성질 변화에 대비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아. 공급자는 계약자에게 납품을 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끼쳐서는 안된다.

제6조 구매 규격 및 사용량

가. 화공약품의 규격 및 연간사용량

품 명	규 격	용 도	저장용량	사용량(톤/년)
활성탄 (Activated Carbon)	비표면적: 850m ² /g 이상 요오드흡착력: 900mg/g 이상 입도: 325mesh 80%이상 pH 9~11 수분: 2%이하. 회분: 10%이하 충진밀도(g/ml) : 0.5 이하 발화점: 400℃ 이상	중금속 및 다이옥신 제거	37m ³	40톤

제7조 규격 미달품의 처리

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 결과 값이 기준 미달로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공인시험성적서상 적합 인정을 받은 약품으로 전량 재 납품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당시 입고량에 대하여 감액 처리할 수 있다.(규격 미달품의 처리는 제7조 나항의 기준으로 감액처리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보일러 운영에 지장을 받거나 TMS 대기배출허용기준 및 다이옥신 기준을 초과할 경우 매반기 발생하는 대기초과부과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석문에너지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손해비용은 공급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석문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납품 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계약규격 미달품은 아래의 계산 금액만큼 감액 처리한다.

(단, 미달품의 적용기준은 상기 제6조에 제시된 규격의 최소 값으로 한다.)

※ 미달시 감액기준 산식

$$| \text{규격치} - \text{미달치} | / (\text{규격치}) \times \text{단가} \times \text{납품수량}$$

다. 계약자는 공급자의 품질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제3의 국가 공인기관에 심판분석을 의뢰 할 수 있으며, 양측은 그 결과에 따른다. 심판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측에서 부담한다.

라. 대금지급의 산출기준

- ① 입고된 화공약품이 적용기준에 합격품일 경우 계근량에 약품 공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 ② 공급된 물량에 대한 대금지급은 계근표 별로 지급한다.

$$[\text{공급물량의 납품대금} = \text{계근량(kg)} \times \text{화공약품 공급계약 단가(원/kg)}]$$

제8조 계약해지 및 조치사항

가. 공급자측의 사정으로 인한 발전정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사전 통보 없이 1일 이상 납기 지연사례가 월1회 이상 발생 시 경고, 2일 이상의 납기 지연 또는 분기 5회 납기 지연 발생시 계약해지
※ 불가항력이란 공급자의 제어범위를 넘는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인해 통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②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의해 불합격 횟수가 연속 2번 발생 시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인기관 시험성적의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계약자는 제7조 “다”항의 기준을 따른다.)

③ 재생탄 및 혼합제품을 사용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상기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석문에너지는 타 공급업체로부터 화공약품을 공급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본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나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쌍방 합의하에 본 계약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업체의 자격조건

가.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를 득하고, 제품규격서에 명시된 성분에 부합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나. 발전시설 납품 실적 업체 : 년차별 실적 인정

다. 수입업체 공급확약서 또는 수입면장 제출업체

라. 연간공급계획서 제출 : 공급계획서 또는 공급확약서

※ 가 조건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조건 중 2가지 이상 충족하여야 함

제10조 안전관리

가. 물품의 납품·입고시 주변을 오염시켜서는 안되며, 주변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귀속한다.

나. 물품의 납품·입고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손상 초래시 공급자는 즉시 원상복구한다.

다. 물품의 납품 및 입고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공급자에게 귀속한다.

제11조 서류제출 및 기타

- 가. 화공약품 사용부서에서 요구한 시험성적서 및 기타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공급자는 화공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목록	
① 약품별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최초 납품시, 연1회
② 약품별 자체시험성적서	납품시, 요청시
③ 약품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자료(MSDS 등)	계약시, 개정시
④ 물리화학적 성질변화에 따른 조치계획서	요청시
⑤ 기술서비스 지원결과 보고서	요청시